[정보공개서 등 록 번 호:20250335]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2025.03.20]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2025.03.20]

jangmandoo60@na ver.com (홈페이지 준비중)

# 장이당제면소

# 정 보 공 개 서

가맹본부 '장이당제면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 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u>가맹거래사</u>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 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화성시 봉답음 상리중심상가길 28-8, 1층 105호(망고타운)

TEL: 1877-7077 / FAX: (준비중) / 가맹사업 담당부서 전화번호: 1877-7077

# 목 차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П.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 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등록한 정보공개서 (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한국공정거래조정원 (http://franchise.ftc.go.kr)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 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 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정보마당' '교육자료'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법령 및 제도' '법령자료'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 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 할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장이당제면소	경기도 화성시 봉 운)	담읍 상리중	·심상가길	.28-8, 1	층 105호(망고타
장이당제면소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	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개인사업자	2023.12.26.	장윤영	1877-	-7077	_
	법인등록번호	개인사업자	사업자등	록번호	654	1-22-01720

##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특수관계인 중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 경영 경험이 있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영업표지		주 소	
	장이당제면소/장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상리중심 <sup>,</sup> 105호(망고타운)	상가길28-8, 1층
대표	윤영	장이당제면소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장윤영	1877-7077	_

관계	상호/이름	영업표지	주 소		
		-1 1 - 1 - 1 - 1 - 1 - 1 - 1 - 1 - 1	경기도 화성	시 융건로106번길	23-6(배양동)
가족	장호덕손만두/장 호덕	장호덕 손만두 외1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u> </u>	2/1	장호덕	1668-0045	_

## 3. 가맹본부의 인수 · 합병 내역

당사는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브랜드 포함)을 인수·합병하거나 다른 기업 (가맹사업 브랜드 포함)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해당 가맹사업'이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장이당제면소	-
상 호	장이당제면소 OO점	-

상표(서비스표)	장이당	출원번호 (4020230112416) 등록번호 (4023063510000)
로고	_	로고
광 고	_	-
그 밖의 영업표지	_	_

####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 이익	당기 순이익
2022	_	_	_	-	-	_
2023	_	_	_	_	_	_
2024	_	_	_	274,432	-	-

\*2024년 재무상황은 신청일 기준 확정되지 아니하여 재무자료 확정 즉시 기입할 예정입니다.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기 1)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 당사는 가맹사업 외 다른 사업을 하지 않아 1)의 매출액과 같습니다.

####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ㅂ	이름	시크	시ㄹ	시크	됬 기이	사업경력			
구분	이글	현 직위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임원	장윤영	대표	2023. 12. ~ 현재	대표	회사 업무 총괄				

####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작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	수(명)	직원수(명)	
시심	상근	비상근	식천구(청)	
2024년 12월 31일	1	_	4	

####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해당 가맹사업 외에도 다음과 같은 가맹사업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가족	장호덕손만두/장호덕	가맹사업	2022.08.~현재	덕이네칼국수(등 록번호:20221208) 이라는 가맹사업 경영
가족	장호덕손만두/장호덕	가맹사업	2017.09.~현재	장호덕손만두(등 록번호:20181053) 이라는 가맹사업 경영

####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장이당 (43류)	외장, 인테리어, 영업표지 등	출원일자 (2023.06.26.) 등록일자 (2025.01.23.)	출원번호 (4020230112416) 등록번호 (4023063510000)	장윤영	2035.01.23.

<sup>\*</sup>상기 상표권은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키프리스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sup>\*</sup>당사에서 귀하에게 허락하는 상표권의 범위는 당사가 제공 또는 승인한 범위에 한하며, 귀하는 임의 제작, 인쇄, 저작 등 권한을 벗어나 상기 상표권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Ⅱ.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1. 【장이당제면소**】 가맹사업 시작 일** : 2024-12-01 【장이당제면소**】 직영점 시작 일** : 2024-01-06

## 2. 해당 가맹사업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장이당제면소	장이당제면소	장윤영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상리중심상가길28-8, 1층
				105호(망고타운)

#### 3. 【장이당제면소】업종

영업표지	업	종
장이당제면소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기타외식	모밀, 만두 등

## 4. 최근 3년간 사업연도 말 해당 가맹사업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022.12.31.			2023.12.31.			2024.12.31.	
시탁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2	1	1
서울							0	0	0
부산							0	0	0
대구							0	0	0
인천							0	0	0
광주							0	0	0
대전							0	0	0
울산							0	0	0
세종							0	0	0
경기							2	1	1
강원							0	0	0
충북							0	0	0
충남							0	0	0
전북							0	0	0
전남							0	0	0
경북							0	0	0
경남							0	0	0
제주							0	0	0

#### 5. 최근 3년간 해당 가맹사업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2						
2023						
2024	0	1	0	0	0	1

#### 6. 해당 가맹사업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구부	구분 상호/이름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업 종	가민	생점/직영점의	] 수
1 4	0 조/ 기日	0 日 111.1	등록번호	н о	2022.12.31.	2023.12.31.	2024.12.31.
가족	장호덕손만두/ 장호덕	장호덕손만두	20180828	기타외식	168/0	169/0	산출중 (미확정)
가족	장호덕손만두/ 장호덕	덕이네칼국수	20221341	기타외식	0/0	0/1	0/1

<sup>※</sup> 상기 표 내용 중 "장호덕손만두" 영업표지의 가맹점 및 직영점 현황은 산출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2024년 정기변경 등록 마무리 후 반영할 예정임을 안내 드립니다.

### 7.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가맹점사업자 한 곳이 2024년에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다음과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금액 상한과 하한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4년 평	균 매출액(단	위: 천원/부기	가세 미포함)		
지역	2024년 가맹점수	연간 매출		연간 매출액			·평균  (하한)	산출 가 맹점 수
	/   0日	연간평균 매출액	면적 3.3㎡	상 한	면적 3.3㎡당	하 한	면적 3.3㎡당	0 П
전체	1	6개월미만 (해당없음)						0
서울		· · · · · · · · · · · · · · · · · · ·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1	5곳미만						0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상기 표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 별 POS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어 있으며,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6개월 미만 운영한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은 산출에서 제외[산출 제외 사유:6개월 미만 운영한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을 1년치로 환산하여 매출액을 추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였으며, 가맹희망자에게 올바르지 아니한 정보제공을 방지하기 위합(산출가맹점 수 참조)]
- ② 6개월 이상 1년 미만 운영한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은 연환산 후 기재(산출가맹점 수 참조)
- ③ 지역별 5곳 미만에 해당하는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은 가맹점 특정 우려로 인하여 생략.
- \*상기 표 매출액은 시장상황, 가맹점사업자의 노력, 경영환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귀하의 매출액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 8. 【장이당제면소】 가맹점의 평균 영업 기간

【장이당제면소】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일)

연 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4	1	31

####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 해당사항없음.

#### 10. 광고 · 파촉 지출 내역

당사에서 전 사업년도에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	단위: 천원, -	부가세 미포함)	비고
丁七	구단	기산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11 77
광고/판촉	#7/IS connect	(비공개)	0	0	0	
합계						

<sup>\*</sup>상기 표 내용은 재무자료 확정 즉시 기입 예정입니다.

#### 11. 가맹금 예치 기관

당사는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금 예치 외에도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만, 가맹희망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아래의 절차를 우선 안내 드립니다.

항 목	내 용	비고
보험인(보험회사)	㈜서울보증과 체결 예정	
보험계약자	장이당제면소	가맹본부
피보험인(보험금을지 급받는 자)	가맹점사업자	
보험기간	가맹금 예치기간(가맹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 또는 가맹점사업자 영업 개시일까지)	
보험금액	예치금액	
보험범위	가맹점사업자의 피해액 일부보장	
지급조건	가맹본부의 가맹금반환의무 불이행	
보험금의 수령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보험금 신청→가맹본부 경우→ 보험회사 접수→보험회사조사→지급여부결정→ 보험금지급	

## 皿.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자시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 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 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 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전면새시, 전기설비, 시설공사, 철거 등의 비용은 포함되지 아니하여 별도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인테리어, 주방설비 등 기타 비용	별첨참조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가맹비	3,300	계약체결 후 예치	영업 개시 전	영업 개시 후	가입비 등의 대가
교육비	1,500	계약체결 후 예치	교육 전	교육 실시 이후	2인기준, 신규교육비
총계	4,800	_	_	_	_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 종료일 30일 이내의 미납채무가 있을 경우 잔존 채무와 손해배상액과 정산 후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단위: 천원)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보증금	5,000	계약체결 후 예치	가맹계약서에서 규정하는 채무(로열티, 물류, 위약 등) 상계처리 후 반환	-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단위: 천원)	비고
가맹비	3,300	부가세포함
교육비	1,500	부가세포함
보증금	5,000	부가세없음
합계	9,800	_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당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인테리어		30,000	1,200	계약 시: 50% 중도금: 40% 완공 시: 10%	미공사시	
음식물배상책임 보험 가입		자율	-	별도계약	별도계약	
냉장고/주방설비/ 주방용품	별첨참조	20,000	800	가맹계약 시		82.5 <i>m</i> <sup>2</sup> (25평)기준
가구(의,탁자)		10,000	400	가맹계약 시	발주 또는	
간판/사인물		10,000	400	가맹계약 시	제작 전	
POS		440	_	가맹계약 시		
초도물품		5,000	-	가맹계약 시		
총계		75,440	3,017	_	_	_

- ※ 가맹본부는 인테리어 공사, 간판의 설치(디자인 시안 무상 제공), 음식물배상책임보험의 가입을 강제 하고 있으나, 거래상대방을 강제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당사 및 당사의 협력업체(미정) 및 자율적인 계약을 통하여 이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의 통일성 및 해당 가맹점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전면새시, 전기설비 등 필수적 요소 만을 투자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맹점사업자는 필요에 따라 시설 공사(도시가스, 전기증설, 소방, 냉난방, 수도, 화장실, 닥트, 외장, 가구, 상하수도유입, 음향기기 등), 철거 등을 실시하시기 바라며, 해당 금액은 상기 표 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을 안내 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한 경우 가맹본부와 별도 로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 위 금액은 최소비용으로 추정한 것으로서 개별 매장의 환경과 가맹점사업자의 선택 등에 따라 실제 지급 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가맹희망자	<ul><li> 가맹희망자의 책임으로 가맹점의 점포입지를 선정한다.</li><li> 가맹본부는 유동인구, 교통량, 입지의 특성, 시장의 특성, 구매습관, 근린시설, 업종별특성 등의 상황에 따른 점포선정에 대한 조언을 할 수 있다.</li></ul>

- ※ 당사는 귀하에게 상권분석 및 점포의 입지 결정을 위한 조언을 할 수 있으나, 해당 사항은 조언일 뿐, 예상매출 또는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귀하의책임과 결정으로 선택하여야 합니다.
  -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ㆍ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신규교육, 보수교육, 특별교육 등	_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근로계약서작성 미성년자 부모동의서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 · 공급업체

해당 가맹사업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8) 한편, 귀하가 당사에 가맹금을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분납제도는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 2. 영업 중의 부담

####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가맹본부	50%(가맹본부):50%(가 맹점사업자)	2주일 전	실시 전	실시 후	브랜드이미지, 상품광고
광고 분담금	가맹본부	50%(가맹본부):50%(가 맹점사업자)	2주일 전	실시 전	실시 후	가맹점모집+상 품광고
	가맹본부	100%(가맹본부):0%(가 맹점사업자)	_	-	-	가 맹점모집광 고 시
판촉 분담금	가맹본부	협의	2주일 전	실시 전	실시 후	판촉 시
교육훈련비	가맹본부	협의	교육실시 전	실시 전	실시 후	교육필요시 실시
로열티	가맹본부	해당없음	협의	없음	없음	부가세포함
음식물배상책 임 보험			자율	-		
지연이자	가맹본부	20%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	-	대금 지급기한을 경과했을 시
점포환경 개선 비용	HL2U 21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	-	-	"VII. 가맹본부의 경 영 및 영업활 동 등에 대한 지원" 항목 참 조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발생 시 협의	협의	정비	실시 전	실시 후	교체비용은 당 사자의 귀책사 유 등을 고려 하여 협의 결 정

##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바로 전 사업연도에 권장 및 필수품목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의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부가세별도)

구분(기준 : 2024년)	내용(단위:천원)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

<sup>\*2024</sup>년 한 해 기준 가맹점사업자의 운영일 수 가 6개월 미만으로 기재에 해당사항 없습니다.

####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독 항목	내 용	시기	비고
재고관리	실재제고 수량을 조사하여 장부상 재고와 비교	필요시	문의: 관리팀
QSC관리	품질, 청결, 서비스 등	필요시	문의: 관리팀

####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위: 천원,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활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 계	협 의	_	_	_	-
추가 교육비	협의하여 결정	교육시작일 7	교육시작 1일이	교육시작 후	추가교육
	111160	이전	전에 계약해지		필요시
점포 이전비	협의하여 분담	점포 이전 후	점포이전에 합의	점포이전시작	점포이전
百工 의신미	됩시아의 군급	10일 이내	하지 않을경우	후	합의시

당사는 계약종료 시점에 점포위치에 대한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있어,가맹점운영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사가 판단하여 협의한 결과 가맹점도 이에 동의하면 점포이전비가 추가 될 수 있습니다.

#### 2)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해당 가맹사업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없습니다. 단 양도 시 가맹본부의 서면 동의는 받아야합니다. 다만, 양수자는 가맹본부가 정한 신규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는 교육비, 보증금을 합한 금액(₩ 6,500,000원/VAT포함)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 3)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 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새로운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게 됩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의 탈퇴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 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귀하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장이당제면소" 브랜드임을 알 수 있는 어떠한 영업표지, 식별기호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또한 계약 종료 후 15일 이내에 당사 소유의 모든 집기를 당사가 지정한 장소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구분	품목	규격	거래 형태	거래 상대방	차액가맹금 수취여부
· 별 천			참조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나) 주요 품목 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단위:원,부가세별도)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 및 용역, 설비, 상품, 원재료,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다음과 같은 경 제적 이익을 수취하였습니다.



#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단위: 천원, 부가세포함)

명칭	관계	경제적이익의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명칭	경제적이익의 내용(매출액)	비고
최강달인푸 드(주)	특수관계인	87/E	(비공개)	(비공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장이당제면소 브랜드 외에도, 장호덕손만두, 별도 점포 등에 납품하고 있어, 브랜드별 정확한 이익의 내용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기 표 경제적 이익의 내용에는 특수관계인의 2024년 한 해 매출액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해당 매출액은 순수 매출액으로 순이익은 보다낮습니다.

####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 1) 당사는 해당 가맹사업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주선하여 특정한 거래상대방이나 가맹점사업자에게 2024년 한 해동안 대가를 수취한 사실이 없습니다.
- 2) 당사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2024년 한 해 동안 경제적 이익을 수취한 사실이 없습니다.

####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 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 • 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2인 모밀세트			
판모밀			
꼬마고기만두(8개)	]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1회 위반: 구두 경고	각 메뉴별로
떡볶이	전쪽에 기재된 이되의	1의 위반· 구구 경고 2회 위반: 서면 시정요구	조합하여 판매
2인 우동세트	]제품글 판매일 ㅜ 없금 ]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가능 함
2인 쫄면세트			

	1인 모밀세트
	1인 우동세트
	1인 쫄면세트
1	인 떡만둣국세트
	인 떡만둣국세트
	비빔모밀
	<u> </u>
	떡만두국
	우동
	어묵우동
	김치우동
	새우튀김우동
	마라우동
	수제돈까스(2P)
	그마김치만두(8개)
	갈비만두(8개)
	매운만두(8개)
	튀김만두(8개)
	옥수수찐빵(6개)
	옥수수찐빵(20개)
	2기찐빵만두(6개)
Z.	l치찐빵만두(6개)
	마라만두(8개)
	새우튀김(2개)
	공기밥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ㆍ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 · 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 (고객)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경쟁업체	당사 또는 지정업체에서 공급받은 상품 및 메뉴	공급 및 파매한 수 없으	1회 위반: 구두 경고 2회 위반: 서면 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 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권장가격(단위: 원)	가격 통보 방법	비고
2인 모밀세트	24,000	홈페이지에 공지, 유선, 팩스 등	2024.11.기준
판모밀	10,500		
꼬마고기만두(8개)	7,000		
떡볶이	8,000		
2인 우동세트	22,000		
2인 쫄면세트	22,000		
1인 모밀세트	15,000		
1인 우동세트	14,000		
1인 쫄면세트	14,000		
1인 떡만둣국세트	15,000		
2인 떡만둣국세트	24,000		
비빔모밀	10,500		
쫄면	9,000		
떡만두국	10,000		
우동	9,000		
어묵우동	9,500		
김치우동	9,500		
새우튀김우동	10,000		
마라우동	10,000		
수제돈까스(2P)	12,000		
꼬마김치만두(8개)	7,000		
갈비만두(8개)	7,500		
매운만두(8개)	7,500		
튀김만두(8개)	8,000		
옥수수찐빵(6개)	7,000		
옥수수찐빵(20개)	20,000		
고기찐빵만두(6개)	7,000		
김치찐빵만두(6개)	7,000		
마라만두(8개)	7,500		
새우튀김(2개)	3,000		
공기밥	1,500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 4. 영업지역 보호

#### 1) 독점적 • 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중 달 만 · 답 중 · 답 귀	가맹본부	계열회사	
장이당제면소와 동일한 메뉴를 주 메뉴로 하는 업종	장이당제면소	해당 없음	

####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점포를 기준으로 반경 500m 단, 반경 500m이내인 경우라 하더라도 행정구역상 동/읍/면/리를 달리하고 직선거리상 철길 또는 8차선대로로 구분된 경우에는 반경 250m	설정기준에 의해 가맹희망자와 협의 후 설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 ※ 단, 특수상권(백화점, 대형마트, 시장, 지하상가, 공항, 호텔, 대형쇼핑몰, 대형아웃렛 등)은 위 설정 과는 별도의 영업지역입니다.
-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 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방법
<ol> <li>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li> <li>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li> <li>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li> <li>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li> </ol>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 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동의 → 영 업지역 변경 완료	30일 이내에 동의여 부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15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데 대하여 별다른 제한을 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가맹본부는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 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 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당 가맹사업 브랜드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 ※ 해당사항없음
-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 ※ 해당사항없음
-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 ※ 해당사항없음.

####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비중			
연 도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4	5.1	94.9	0	0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연 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4	0	0

####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의 기간

해당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2년이며 갱신계약 시 갱신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갱신요구 거절 사유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 한 경우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 해당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 (1) 일반적인 해지사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 일반적 해지 사유

- 가맹점사업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 체납 처분을 당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사전 동의 없이 가맹본부의 영업표지가 인쇄된 소모품과 비품 등을 제작하거나 인쇄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의 위법행위로 가맹점의 상표에 대한 신용 또는 제품 판매에 손해를 끼친 경우
- 가맹본부의 상호 또는 상표를 불법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가맹본부의 상호 또는 상표아래 가맹본 부의 상품을 가맹사업목적과 다른 방향으로 판매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를 임의로 변경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점포의 임차권이 종료된 경우
- 가맹점사업자의 채무가 계약이행 보증금을 초과한 경우 또는 대금지급을 연체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직원이 교육규정에 의한 교육의 이수를 해태하거나 지체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치가맹금 지급에 필요한 증명서류 또는 확인 서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동종 업종의 영업을 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감독 및 시정요구규정에 의한 가맹본부의 시정요구를 받고도 3일 이내에 시정하 지 아니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품질기준과 영업관리 기준을 1회 이상 위반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동의 없이 임의로 메뉴를 변경, 추가하거나 가맹본부에 의해 변경된 메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상품자체 조달하여 용도외 사용하거나 이를 타 업소에 제공 또는 판매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물품공급비용 미결제 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 받은 물품을 타가맹점에 공급 또는 경쟁업자에게 공급한 경우

- 자점매입하거나 품질검사를 2회 이상 응하지 않는 경우
- 지정한 복장을 착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운영매뉴얼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시설의 교체나 보수 요청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약정한 광고 및 판촉활동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사전 동의 없이 점포의 권리이전, 명의변경을 했을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동일한 불만사항을 접수 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하는 등 가 맹본부의 가맹점에 대한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귀책사유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개점이 불가능한 경우

#### (2) 즉시 해지사유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해지 할 수 있습니다.

#### 즉시계약 해지 사유

- ㅇ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 ㅇ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 ㅇ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 ㅇ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 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 ㅇ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 조건을 수정 사유 발생 시 각 당사자의 서면에 의한 합의를 통해 변경 가능합니다.

계약 수정 사유	관련 계약 조문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제44조 2항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수정 계약서(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효력 발생

####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양도 2개월 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 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 관리팀

※ 당사는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잔여 계약기간 포함)를 포괄승계 하게 되며 이 경우 양수자는 가맹본부가 정한 신규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는 교육비와 계약이행 보증금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으로 체결 할 수 있으며, 신규계약 시 계약갱신요구권 10년이 새로이 부여되지만, 가맹비,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을 모두 지불하여야합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영업개시 전 까지 당사에게 소정의 교육비를 부담 후 이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비고
상속	본부 승인 시 가능		본부에 서면통보 → 본부 승인 → 교육 수료	
대리행사	본부 승인 시 가능		본부에 서면통보 → 본부 승인 → 교육 수료	
업무위탁	불가능	_		

####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존속기간 중은 물론이며,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이 종료된 경우라면 계약기간 만료 후 2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전국 지역에서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자기또는 제3자의 명의로 가맹본부와 동종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상이당제면소 와 동일한 메뉴들 파메차느 어조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해당 가맹사업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10:00 ~ 22:00	월 24일 이상	문의: 관리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질병의 발생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종업원 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2명	직접 근무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점주의 부재 시 사전 통보

####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담당팀	비고
매장 청결	담당자 매장 방문 → 청결도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필요시	본사 관리팀	
친절도	담당자 매장 암행방문 → 주문 → 친절도 확인 → 관리표 작성 → 완료	필요시	본사 관리팀	
품질 관리	담당자 매장 방문 → 품질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필요시	본사 관리팀	

####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본 계약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할 경우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7 13	구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보다. 지의	нJ –	
<b>十</b> 七	광고 성격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분담 절차	비고	
	브랜드이미지광고, 상품광고	광고비의 50%	50% (가맹점 수로 균분)	별도의 약정 또는 사전협의→가맹점사 업자의 일정비율		
광고	가맹점모집+ 상품광고	광고비의 50%	50% (가맹점 수로 균분)	이상 동의→1개월 전 분담비용 통지 →2주 내 분담금 납부	대중매체 광고	
	가맹점모집광고	전액 부담	없음	_	_	
판촉 행사	행 /	ㅏ에 따라 달라짐 (별도공고)		행사 계획 공고 → 가맹점부담액 제시 → 가맹점의 행사 참여 결정 → 행사 종료 후 최종 분담 금 확정	개별 행사, 광고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별하게 필요한 절차는 없습니다.

####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에게 본 계약 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계약기간 중에도 서면에 의하여 양당사자가 합의하여 해지할 수 있다. 다만, 해지를 원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잔여 개월 수 \* 금 이백만원(\(\pi \)2,000,000)을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서 제18조(비밀유지의무), 제19조(경업금지 의무) 및 제37조(계약의 종료와 그 조치)규정을 위반할 경우 가맹본부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률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에게 다음과 같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1) 제18조(비밀유지의무), 제19조(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가맹본부에게 위약벌로 금 이천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 2) 제37조(계약의 종료와 그 조치)를 위반할 경우 위반 1일당 금 이십만 원을 위약벌로 "가맹본부"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3) 제24조(자점매입금지)를 위반할 경우 금 일천만 원 을 위약금으로 "가맹본부"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 체결 이후 개점 전 단순변심으로 인해 본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가맹점사업 자는 가맹본부에게 계약체결 이후 3일 전 이라면 예치금의 3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계약체결 3일후부터 오픈 전 이라면 예치금의 8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 인테리어, 기기, 시설 등 이행이 진행된 경우라면 개점 전 위약금과는 별도의 책임을 진다.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1. 상담ㆍ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0평 기준)

구분	내용	소요기간	비고
합계		36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 방문, 홈페이지		소요비용
상담	- 전화 상담 - 사업내용상담	1일	은 정보공개
정보공개서 제공	- 정보공개 사항 검토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 계약	서 로마4의 영업 개시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	- 계약체결희망자에게 가맹계약서 사전제공	계약체결 14일전	이전의 부담 참조.
가맹계약체결	- 가맹계약서 1부씩 교부 보관, 일정협의	1일	단, 소요비용
가맹금 예치	- 당사와 계약된 은행에 가맹금 예치	1일	은 은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3일	추정금액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2일	일뿐,
점포집기, 주방기기입고	- 점포집기, 주방기기, 초도물품 입고	10일	시장상황 및 경영환경
기초교육	- 점포운영교육 실시	3일	에 따라질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수 있음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조정을신청하거나(연락처:1588-1490,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

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 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지급절차	비용부담 제외사유	비고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 로 안장되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빵(않) 통알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간판교체 비용 ○인테라어 공사비용 (장바집기의 교체 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 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 계약서 등 공사 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뷔)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경우 1년의 범위내 에서 분할지급기능) ○가맹본부가 동하여 점포환경개선이 끝 당기 당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보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보발지급시절차〉 ○가맹점사업자 검 한 경우에는 점 포환경개선이 끝 보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수 있는 서류 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뷔)	<ul> <li>가맹사업</li> <li>거래의</li> <li>전화에 법률</li> <li>제12조의</li> <li>규정에 담대</li> <li>외사유</li> <li>당시</li> </ul>	ㅇ 경영에 본책는 로이 (해업포경가부 담잔간례부지하거미한에수능포선터 내맹의 없유 14 로이 (해업포경가부 담잔간례부지하이급우환가 등에 보쟁 이 바 이 없유 14 등 이 생 14 등 기 비 는은 지하이급우환가 하는 15 등 15 등 16 등 16 등 17 등 18 등 19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
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
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 해당사항없음

##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고
가맹본부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 (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 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 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 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15 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 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 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 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본부 부담	문의: 관리팀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15일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이를 설명	가맹점부담 (요청 시 별도 협의)	문의: 관리팀

## 4. 신용 제공 등 내역

※ 해당사항없음

##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돕기 위해 경영상 지원활동을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아래 지원내용 이외에도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사정 등을 감안하여 추가 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정책	주요내용	비용 부담	비용
가맹본부	단기간 근무 인력 소개	가맹점사업자	별도협의

##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1. 교육ㆍ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신규 교육	회사 소개 음식 가공 고객 관리 문제해결방법 교육	이론, 실습	오픈 3일 전 까지	필수 교육
보수 교육	신 메뉴 가공, 종업원 관리 실무, 조리미숙, 조리매뉴얼 미준수 등	이론, 실습	필요시	필요 시
특별 교육	필요시	이론, 실습	필요시	필요 시

\*귀하가 영업을 개시한 이후라도 조리와 관련하여 미숙, 매뉴얼 미준수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교육 일정을 조율하여 추가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해당 가맹사업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대시간	비용(부가세포함)	비고
신규 교육	3일. 단, 숙련자의 경우 5시간	1,500천원 (2인 기준)	최초 계약 시 이수
보수 교육	별도계획	필요시 산정	신 메뉴 출시 등(본사 요청시 연 4회 의무교육)
특별 교육	별도계획	필요시 산정	필요시 실시

####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종업원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 4. 교육・훈련 불참 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기한 내 해당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가맹점 오픈이 지연되거나 가맹점에 근무 할 수 없으며, 상품공급 중단 및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1	경기	봉담상리점	경기 화성시 봉담읍 상리중심상가길 28-8 1층 105호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일)

2024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362(약 1년)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4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247,626	POS상 매출액, 배달 매출을 근거로 작성			

####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관리팀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239~4241)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 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정보공개서는 당사의 홈페이지 또는 <b>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저</b> (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ᅨ공시스템

별첨 #1

	가	-맹금	예치	신청서			
	상호(가맹점)명						
신청인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소)					전화:	
	상호명(영업표지)						
가맹본부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소)					전화 :	
예치가맹금		₩			(금		원정)
신청인의 계좌							
가맹본부의 예치계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 6조의 5 제1항, 동법 시행령 제 5조의 7 제 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맹금을 예치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예치기관의 장

귀하

지점장

별첨 #2

# 점포 예정지 인근 가맹점, 직영점 현황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가맹점(직영점 포함) 10개의 일반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중인 가맹점이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 현황을 제공하며, 장래 점포예정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되는 즉시 제공하겠습니다.

구분	점포명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비고
1					
2					
3					
4					
5					
6					
7					
8					
9					
10					

별첨 #3

# 정보공개서 수령확인증(가맹희망자용)

본인은로부터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귀사의 정보공개서를 수령함에 있어 귀사의 영업비밀 또는 사업에 관한 중요정보를 무단으로 유출 또는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						
임원의 법위반 사실 4)가	<u>차</u> : 1)가맹본부의 일반현황 맹점사업자의 부담 5)영업활 절차와 소요시간 7)가맹본부	동에 대한 조	건 및 제한 6)가다	맹점사업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성명:(인)						
3. 제공자(가맹본부)						
가맹본부명:	대표자명:	(인)	제공일: 20 년	월 일		
본인은	절취선 정보공개서 수령호 로부터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있 업비밀 또는 사업에 관한 중.	<u>확인증(가맹</u> 통 t음을 확인합니	<u>부부용)</u> 니다. 또한 귀사의	정보공개서를		
	·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성					
임원의 법위반 사실 4)가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훈련에 관한 사항 2. 수령자(가맹희망자)	<u>차</u> : 1)가맹본부의 일반현황 맹점사업자의 부담 5)영업횔 절차와 소요시간 7)가맹본부	동에 대한 조	건 및 제한 6)가다	맹점사업		
	주민등록번호: .					
성명:(인)						
3. 제공자(가맹본부)						
가맹본부명:	대표자명:	(인)	<u>제공일: 20 년</u>	월 일		

별첨 #4 재무상황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별첨 5 물품구입 및 임차현황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